

법원의 영장 열람금지 파문과 알 권리

김동철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법원의 영장 열람금지조치

지난 1992년 5월 28일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언론기관이 영장내용보도로 사건상 유죄확정판결전까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할 형사사건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를 들어 「관행으로 인정되어 왔던 기자 등의 구속영장 열람을 금지」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6월 8일부터 이 조치의 시행에 들어갔다.

위 법원은 「최근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편집자세로 명예훼손 여부 관련 시비가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고, 언론기관 역시 초헌법적 무제한의 자유를 누릴 수는 없으므로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한 법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의 탈법적 영장공개관행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조치를 시행한 서울 동부지원은 「현행 형법 제 126 조에 따르면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개할 경우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고, 또 형사소송법 제 47 조도 구속영장이나 소송관계서류를 비공개서류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현행 형법 제 126 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보조하는 자가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피의자의 인격보호를 이유로 하는 법원의 이와 같은 조치가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는 등 부작용의 소지가 크다는 반론이 강하게 지적되기에 이르렀다.

이 영장 열람금지 조치에 반대하는 측의 주장은 헌법상에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를 크게 제약하는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재야 법조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언론보도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결과발표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재야법조계는 또公安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의 「비밀영장」이 적지 않게 발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법원의 이와 같은 영장열람금지조치는 언론에 의한 사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저해하고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마저 없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언론계 또한 재야 법조계의 이러한 반대의사를 크게 보도하면서 「민주사회에서 모든 형사 피의자들의 인권은 보호 받아야 한다. 과거에 불행하게도 유죄확정판결 이전의 언론보도로 일부 형사피의자 등의 인권이 침해 받은 사례가 있었음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취재기자들의 영장열람을 전면적으로 금지 한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영장열람의 원칙적금지가 법원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물론 오히려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약할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속영장열람 금지조치에 대한 위와 같은 반론에서는 1992년 4월 법무부가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에서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추가하여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자유보장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려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재야법조계와 언론계의 이와 같은 여론에 따라 같은 해 6월 10일 대법원은 영장열람금지조치는 시기상조라는 비공식 입장을 동부지원에 전달하게 되었고, 6월 11일에는 동부지원이 열람금지방침을 철회기로 하고 12일부터 이 금지조치를 해제하게 되었다.

재야 법조계에서도 영장열람금지조치에 대해 모두가 반대한 것은 아니고, 6월 23일에는 서울변호사회가 소송서류공개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법원은 구속영장 등을 언론에 공개 했던 종전의 관행을 중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 요소인 동시에, 또한 인권보호도 경시되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이다.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무겁게 보아 다른 하나를 가볍게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보호라는 두 측면에서 이번의 구속영장열람금지조치를 둘러싼 파문은 언론계 뿐만 아니라 학계나 법조계에 중요한 연구과제를 던져주고 있다.

II . 사건보도와 언론보도의 현실

언론의 자유가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라 하는 것은 인류사회가 오랜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이며, 또 민중이 알아야 할 권리와 알고 있는 것을 자유로이 구사할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신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신문윤리강령은 자유의 장 제 1항에서 「신문의 자유는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끝까지 이를 옹호하여 민중이 알아야 할 권리에 끝까지 부응하여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민주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러기에 취재의 자유 · 보도의 자유 · 평론의 자유 · 전달의 자유 · 취재원 비익의 자유 등의 실질적 자유가 보장됨을 요구하게 되고, 이러한 자유가 결국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신문의 자유가 아무리 귀중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정되는 것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에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자유나 권리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이다.

우리나라 현행 헌법의 언론조항에 「언론 ·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 ·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고, 또 제 17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언론 · 출판의 자유의 한계와 통제의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이에 덧붙여 같은 헌법 제 37조 제 2항에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은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뜻을

규정하고 있어,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른 방법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는 한계도 또한 제시 하고 있다.

헌법이 이와 같이 언론자유에 대해 개별유보조항을 특별히 규정한 이유는 언론의 특수성과 관련해서 특히 침해가 예상될 수 있는 반대입법의 보호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히 타인의 명예나 권리에 대해 언론 자유의 한계를 명백히 그어놓은 것은 같은 헌법에서 규정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개념으로부터 유래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이 언론에 대해 제 3자 효력을 갖게 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언론에 대해 이와 같이 법적 통제를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절대적 기본권이라기 보다는 국민이 향유하는 여러 가지 기본권 중의 하나이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여러 가지 국가적 · 사회적 및 개인적 법익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고,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가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적 · 사회적 · 개인적 법익과 상충될 때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이익교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를 근거로 해서 언론자유에 제한에는 첫째, 국가적 이익과의 형량의 문제, 둘째 사회적 이익과의 형량의 문제, 그리고 셋째 개인적 법익과의 형량의 문제가 중요시되고, 언론매체에 관해 여러 가지 통제를 형법 또는 민법으로 법제화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통제로서 저작권 침해 · 명예훼손 · 신용훼손 · 사생활권 침해 ·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규제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언론보도와 시민의 권익의 문제도 이러한 각도에서 고찰되어야 하며, 특히 언론매체의 사건보도로 말미암아 시민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되게 된다.

언론의 보도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당한 예는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매우 허다하다. 특히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중대 범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언론보도로 인한 인권침해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이 있으며,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이를 원인별 유형과 침해된 권리별 유형으로 세분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원인별 유형을 보면 ① 허위의 보도, ② 과장보도, 왜곡보도, ③ 미확인으로 인한 오보, ④ 수사기관이 발표한 내용이나 수사기관이 작성한 문서내용을 과신한 데서 오는 부당한 보도, ⑤ 흥미위주의 선정보도, 저열한 표현 보도, ⑥ 사생활 폭로 보도, ⑦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봉육한 부녀자의 주소 성명과 사진 등 공개, ⑧ 사건과 무관한 가족의 성명 등의 공개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또 침해된 권리별 유형을 분류해 보면, ① 사람이나 집단의 명예나 신용의 훼손, ② 프라이버시의 침해, ③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 ④ 저작권 침해, ⑤ 소년법 · 가사심판법 심리대상자 보호원칙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미확인에 의한 오보라 함은 언론매체가 신속보도를 사명으로 하고 타사와의 경쟁과 마감시간을 크게 의식해서, 관련자에게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기 때문에 생기는 유형이다.

또 수사기관의 발표 등의 과신에 의한 부당보도라 함은 취재원이 공신력이 있다고 믿어지는 수사기관이므로 이를 과신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부당보도이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 제 198 조에는 「검사·사법경찰관리·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련 있는 자는 비밀을 준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언론매체가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발표한 내용이나 수사기관이 신청하여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 등의 문서내용 등을 그대로 믿고 보도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을 지나치게 소상히 때로는 앞질러 보도함으로써 「용의자」를 독자들에게 「진범」으로 오인하게 만든다든가, 수사상 소홀했던 맹점을 지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언론매체에 보도하는 등의 사례는 자칫하면 결과적으로 무고한 죄인을 만들어내,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언론보도로 사람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당한 예는 매우 허다하다. 그 중 몇 가지 잘 알려진 사례를 들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모 씨에 관한 오보사건, 윤경화 노파 피살사건, 여대생 박상은 양 피살사건 등을 들 수 있다.

(1)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모 씨에 대한 오보사건

이 사건은 1981년 4월 4일자 한 조간신문에 보도된 오보사건으로서, 「몬트리얼 올림픽 레슬링금메달리스트 양○○ 씨가 대마초를 피우고 절도를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로 시작된 이 보도는 취재기자가 출입처인 법원에서 밤늦게 발부된 구속영장을 열람하고 취재한 내용을 마감시간에 쫓겨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관리가 작성한 조서와 가짜행세를 하던 동명이인인 범인의 주장만을 그대로 믿고 기사화한 것이었다. 이 보도는 미처 확인을 거치지 못한 단계에서 타사와의 경쟁하에서 특종기사를 바라고 너무 서둘렀기 때문에 생긴 오보이었다.

이 신문은 다음 날인 5일, 같은 면, 같은 자리에 같은 단수의 크기로 『금메달 양○○ 선수, 동명이인의 사칭에 「내 이름 파는 가짜 다시는 없길」』이라는 표제를 붙여 보도했다. 속보의 성격을 띤 이 기사는 4일자의 사실기사에 뒤이어 나온 또 하나의 새로운 사실기사로서 이 기사를 읽은 독자들은 나름대로 유추해서 전일의 기사가 오보이었음을 알 수 있을 정도이었다.

이 오보로 양씨와 그 가족들이 입은 명예훼손은 비록 일시적이었다 해도 매우 컸을 것이다. 더구나 전일에는 신문보도와 함께 일부 라디오의 뉴스로도 이 기사가 방송되었으니 그 권리침해는 대단한 것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점에 관련하여 워싱턴 포스트에 게재되어 1981년 4월 기획기사부문 폴리처상까지 탄 여기자 자네트 쿡크가 쓴 마약중독소년의 이야기 『지미의 세계』란 제목의 기사보도가 날조된 허보이었음이 드러나자, 이 신문은 옴부즈맨인 빌 그린(Bill Green)의 글을 통해, 이 날조된 기사가 신문에 실리게 된 경위와 그에 대한 자기 비판을 『자네트의 세계』란 표제 밑에 5페이지에 걸쳐 동지 1981년 4월 19일자 신문에 보도했다.

「지미는 결코 실존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워싱턴시를 뒤흔들었고 워터게이트 사건추적 보도의 자랑스러운 명예를 지닌 워싱턴 포스트를 모독했다.

지미의 이야기는 명예를 차지 했으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으며, 이에 대해 포스트지는 독자들에게 이 엄청난 실수를 해명해야 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 났는가? 왜?...」로 서두를 시작한 이 보고서 기사는 종합평가, 보도의 경위, 반응, 허보게재의 실수를 저지르게 된 사유, 내재하는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자기비판 등을 자세하게 지적하면서, 그것이 전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포스트지의 과오이었으며, 신문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신뢰도에 먹칠을 했다고 솔직하게 서술하고 있다.

(2) 윤경화 노파 일가족 피살사건

이 사건은 1981년 8월 4일에 윤경화 노파, 가정부 및 윤씨의 양녀 등 3명이 자택에서 피살된 시체로 발견된 다음 윤씨의 조카며느리인 고모 여인이 그 살해혐의자로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 기소되었으나 1심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은 후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결국 무죄로 확정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고 여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발표에 근거한 언론 보도로 고 여인과 그 가족의 인권침해 문제가 매우 크게 세인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 사건은 시초부터 큰 화제의 대상이 되었고 따라서 뉴스의 큰 초점을 이루었다. 언론기관은 이 사건 조사경위에 관한 속보와 윤씨의 주변사생활, 혐의자로 등장한 고 여인의 가정환경과 그 주변 등에 관한 내용을 소상하게 매일 보도했다. 더구나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 중 한 사람이 증거품을 빼돌렸다가 발각된 사건이 있게 되고 또 고 여인이 혐의사실을 부인한다는 기사가 계속 보도된 데다가 공판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이서로 많이 엇갈리고, 결국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사회에 큰 파문을 던지게 된 것이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해 허위로 자백함으로써 인권이 유린된다면 그 책임을 수사기관이 면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다. 뿐만 아니라 1심 선고까지의 과정에서 언론기관이 수사기관의 발표를 그대로 과신하여 무고한 사람을 범인으로 보도하였다면, 그로 인해 입은 인권상피해도 막대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보도를 통해 언론측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점에 관해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언론매체가 이 사건을 보도한 일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비밀수사로 빚어질 수사상의 오류 가능성을 줄였으며 수사과정에서 나라만 당국의 수사상의 맹점 등을 지적·비판하기도 하고 또 공판과정과 판결을 분석 보도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진실을 정확하게 종합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움을 준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관계인들에 대해 언론이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했음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법성은 조각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 볼 때, 경찰의 수사과정을 지나치게 소상히, 때로는 앞질러 보도함으로써, 「용의자」를 「진범」으로 오인케하는 기사들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언론이 비교적 냉정하고 또 정확을 기하려 했고 수사기관의 수사상의 허점을 여러 차례 지적했던 언론의 노력이 엿보였으나, 수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지면이나 시간을 할애 보도한 점, 자극적인 제목을 많이 쓴 점, 현장사진 설명들이 고 여인을 진범인양 오인케 한

점 등과 특히 수사기관의 사후검증을 너무 소홀히 다룬 인상이 짙다는 점 등은 신문이 크게 반성해야 할 점으로 지적해야 할 것이다.

(3) 박상은 양 피살사건

이 사건은 1981년 9월 발생한 여대생 박상은양 피살사건과 관련되어 박양과 해외연수 동기생이던 장모 대학생과 또 하나의 동기생인 정모 대학생이 관련되어 수사를 받아오던 사건이다.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장모 군은 경찰에 연행되어 불법감금에 의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크게 입었다. 장모 군은 후일 석방된 후 경찰이 새로운 용의자로 정모 군을 검거 기소함에 따라 장군의 무고함이 드러났으며, 정모 군도 재판 결과 무죄가 확정되었지만 장군과 정군 및 그 가족과 관계인들의 명예는 크게 훼손되고 학생의 신분으로 학업에도 큰 지장을 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다. 한편 살해된 박양도 흥미 위주의 과잉보도와 저열한 표현으로 그 유가족들이 입은 피해는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윤경화 노파 사건 때와 같이 장모 군과 정모 군을 진범인 양 오인케 하는 과장보도로 그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분명하나, 공공의 이익이란 뜻에서 일종의 특권이 주어진 신문으로서 사회적 관심사의 대상인물로 등장한 사람에 대한 사실보도를 했다는 점에서, 법적으로 볼 때 신문은 명예훼손의 법률적 책임의 문제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장군과 정군, 그리고 그 가족 등, 이에 관련된 사람들은 수사과정과 이 사건의 보도로 인해 입은 권리의 침해가 막대한 점에서 볼 때 신문은 큰 도의적 책임이 있음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무릇 모든 형사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라는 원칙을 엄수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도 앞서 본 윤 노파 일가족 피살사건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신문 윤리 면에서의 자기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981년 10월 28일, 이 사건 보도와 관련해서 5개의 일간신문에 비공개경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5개지 모두 장군의 이름은 물론 신문에 따라서는 그의 사진까지 크게 게재했고, 비록 그 취재원이 수사 당국이었다 하더라도 아직 용의자의 위치에 있는 장군의 성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은 <용의자에 관한 보도기준>(1967. 9. 6)을 위반했다고 인정」 되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1967년 9월 6일자로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정해서 회원 각 사가 준수하도록 한 「용의자에 관한 보도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현행범 또는 현저한 증빙이 있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용의자의 주소 · 성명 · 사진 · 직업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2) 피의자를 명확한 증거 없이 진범이라고 인정하도록 보도하지 않는다.

(3) 형사사건의 현장검증에 있어 참혹한 장면은 사진으로 보도하지 않는다.

III. 피해사실공표금지의 법리

앞서 본 바와 같이 한동안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일부 형사사건에서 요란하게 보도되었던 사건내용이 적어도 재판의 결과로 나타난 사건의 진실과 다르게 되어, 국민들로서는 어떤 편이 옳은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일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윤 노파

피살사건의 피고인이었던 고 여인은 1 심, 2 심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3 심에서도 무죄가 확정되었고, 박상은 양 피살사건의 피의자도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사법판단의 결과는 공판개시 전에 보도되었던 내용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방향으로 끝나게 되었다.

언론매체에 보도된 피의사실과 재판의 결과로 나타난 진실 사이의 상이점이 크게 나타난 것은 위 사건 예 뿐만 아니라 허다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생겨난 것인가를 생각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경우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수사과정에서 수사관계자 등의 잘못 판단된 피의사실을 미리 공표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언론기관의 과오보도로 그런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 셋째로 수사당국의 공표내용이나 언론기관의 보도내용은 모두 진실인데 법원이 오판한 결과로 그와 같은 예가 생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중 세 번째인 법원의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상급심과정에서 시정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법관의 독립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달리 대처하는 도리가 없을 것이다. 첫째와 둘째의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공표와 보도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공지의 피의사실과 사법기관이 판단한 진실이 서로 어긋나게 되는 예를 어느 정도나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형법, 형사소송법, 소년법, 변호사법 등에 피의사실의 공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두어 피의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보호를 꾀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피의사실의 공표와 관련하여 제일 뚜렷하게 규정된 것이 형법 제 126 조의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이 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범죄수사권이라는 측면과 피의자의 인권보호라는 측면의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즉 피의 사실이 공표 · 보도되는 통로를 원천적으로 막음으로써 피의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한편 수사의 원활과 재판의 공정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피의사실공표죄의 주체는 검찰 · 경찰 기타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이다. 즉 특수공무원만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직무범죄이다. 또 행위의 객체는 직무를 행함에 있어 지한 피의사실이다. 피의사실은 반드시 진실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이어서야 하므로 직무와 관련 없이 알게 된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의 공표행위에는 피의사실을 공개해서 보도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행위일 뿐 아니라 기자의 수사기록 열량을 묵인하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부작위도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이들 수사기관자들이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것은 공판 청구 전 즉 공소제기 전까지이다. 따라서 수사관계자 이외의 사람, 예컨대 기자나 변호사와 같은 사람이 피의사실을 보도하거나 누설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형법의 이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제 198 조에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여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는 주의규정을 두고 있다.

1. 피의자 무죄추정

피의사실의 공표금지를 형법이 규정하게 된 근거의 첫째는 피의자의 무죄추정, 즉 모든 형사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법원에 의해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데에 있다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피고인에 대한 조항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서 형사 소추단계에 있는 피고인까지도 당연히 무죄추정을 받는 만큼, 아직 공소제기 이전의 단계에 있는 피의자가 그러한 추정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헌법에서 정해진 국민의 무죄추정이라는 기본권에 상응해서 국가가 피의사실공표금지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피의자는 국가에 대해 피의사실의 불공개를 위한 조치를 법률적 권리로서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가는 피의사실의 공표를 형벌로써 금지하게 되는 것이다.

2. 피의자의 명예보호

국민은 자기의 사회생활에서 명예를 존중 받을 권리를 가진다. 우리 헌법 제 21 조 제 4 항은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언론기관이 타인의 명예를 침해해서는 안될 의무를 국가에 대해 부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한편 모든 국민은 국민상호간에 명예훼손행위가 행해지는 일이 없도록 제반조치를 취해 줄 것을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대 국가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형법상의 「명예에 관한 죄」 규정이나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련되는 조항, 국가배상법등의 법조항들이 명예와 관련된 국민의 권리를 실현하기위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논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도 이러한 국민의 명예권 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법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3. 국가의 범죄수사권과 법에 의한 공정재판권 보호

법적으로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러한 공표가 국가의 범죄수사권의 원만한 수행과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해친다는 데에 있다.

공소 전에 범죄사실이 공표됨으로 말미암아 원활한 범죄수사에 지장을 가져오게 될 염려가 있고, 피의사실이 자세하게 공표되는 경우, 그것은 해당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독립성이 약한 검찰 및 기타 수사관계자들을 쉽사리 외적 압력에 노출시키게 됨으로써 수사의 원활한 진행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

피의사실이 공개되었을 때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해칠 수도 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피의사실이 공개되는 경우, 국민의 이러한 재판청구권이 손상될 수 있고, 또 공정한 재판으로 올바른 국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국가적 법익도 침해될

수 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피의사실이 기소 전에 공개되면 「법에 의한 재판」이 「여론에 의한 재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 법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기 쉽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형법 제 126 조에 규정된 피의사실 공표죄의 주체는 범죄수사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며, 행위의 객체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알게 된 피의사실이고, 그 범죄행위는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것이다. 공표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공연히 알릴 것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특정한 1인에게만 알릴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게 될 때에는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작위에 한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의 피의사실공표금지의 법률적 배경은 위와 같지만, 우리의 실체는 법제상의 규정과 상응하지 못한 사례가 허다함을 볼 수 있다.

즉 수많은 피의사실이 공공연하게 공표되어 오고 있으며, 특히 검찰이나 경찰 기타 수사관계자 등에 의한 피의사실 공표를 형법에서 금지하고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자들이 이를 공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공표행위 중에는 국회에서의 국정정보고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거나 또는 이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어 행해졌다면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것이나, 그 밖의 공표행위는 형법 제 126 조에 위반의 추정을 받을만한 일이라 하겠다. 수사기관이 범죄수사 진행 중에 피의사실에 관한 정보를 비공식적으로 누설한다거나 검찰이 수사결과 발표라는 형식으로 기소 전에 신문이나 방송에 피의사실과 수사경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공표하는 일이 많다는 우리나라의 현실로 보아 사실상 형법 제 126 조는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러기에 정부도 최근에 와서는 이 피의사실 공표죄에 관한 형법 제 126 조의 규정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단서규정을 첨가함이 마땅하다는 견해를 갖고 형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있는 실정이다.

IV.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존중, 그 중에서도 인권보호는 경시되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이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도 기본적 요소이다. 이들은 동시에 존중되어야 하며 어느 하나를 무겁게 보아 다른 하나를 가볍게 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형법 제 126 조의 피의사실 공표죄의 규정은 공판청구 전에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사실공표를 금지하는 것이지만 그 근본취지는 이를 일반이 알게 되는 것을 막아 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유추된다.

그러나 언론으로서는 피의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아말로 언론의 자유의 밑바탕을 이루고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중대한 알 권리에 현실적인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국민으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포함한 모든

사실을 알도록 하는 보도행위에 어떤 형태로든간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곧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침해가 된다.

이번의 서울지법 동부지원의 구속영장 열람금지 방침이 비록 유죄확정 판결 이전의 언론보도로 형사피의자의 인권이 침해 받는 일을 막기 위한다 할지라도 취재기자들의 영장열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 했던 것은 이론의 여지가 많다. 영장열람의 원칙적 금지가 법원에 대한 언론의 감시기능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오히려 형사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제약할 소지도 많기 때문이다.

1992년 4월 법무부가 마련하여 입법예고한 형법개정안의 피의사실공표죄 조항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규정을 덧붙여 형사피의자의 인권보호와 동시에 국민의 알 권리 및 언론자유보장의 현실적 요구를 조화시키려 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취재기자들의 구속영장 열람과 형사피의자의 인권침해 내지 명예훼손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실은 별개의 일이라 할 수 있다. 언론 자유는 막중한 책임을 수반하고 있는 것이며 일부 형사피의자의 인권이 일부 언론보도로 침해되었다면 그것은 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구속영장 열람의 전면금지 같은 조치로 국민의 알 권리를 원칙적으로 제약할 수는 없는 것이다.

V. 맺는 말

위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범죄사실 보도에 관하여는 두 가지의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 그 중 하나는 형사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 해서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수사관계자가 공표함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번의 구속영장 열람금지방침도 비록 그 방침이 철회되기는 했으나 이러한 차원에서 착상된 것이었다.

또 하나는 언론이 범죄사건에 관한 피의사실을 공판 전이나 공판 도중에 보도함으로써 첫째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둘째 법원이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을 감시하며, 셋째 그 결과로 언론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오늘날 언론매체가 범죄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 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면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며 언론의 자유를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사명을 지니고 있는 반면 무책임한 편집자세로 형사피의자들의 명예나 인권을 유린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유죄확정판결 이전에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할 형사피의자의 명예가 부당하게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책임을 강하게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범죄사건보도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① 언론매체는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나 보도기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아무리 형사피의자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인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한다는 헌법의 정신을 깊이 새겨야 한다.

④ 범죄사건보도에서 사용되는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⑤ 언론사는 내부의 기사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당해 매체의 범죄사건 보도 기사 내용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고 기사의 질 향상을 꾀함으로써 무책임한 편집자세라는 외부로부터의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신문윤리위원회 등의 자율적 통제기관은 회원사매체의 기사나 내용에 대한 사후심사를 철저하게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언론에 대한 신뢰를 드높이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